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5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구 윤 철

●대통령령 제3578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5까지”를 “별표 17까지”로 한다.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
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
한다.

[별표 16]

2025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	90	기타	감자칩 제조용	0	6,000톤

[별표 17]

2025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찢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10	초본류 딸기		0	3,000톤
0811	90	기타	과실로 한정한다.	0	1,300톤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10,000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9	기타			

		6. 기타	과실로 한정한다.	15	3,500톤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7	사과주스			
2009	79	기타		15	1,200톤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 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0	수입 전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딸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